서 울 특 별 시 하 수 도 사 용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9

2025년 9월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 보류),
제332회 임시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2).

2)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안 별표 2).

3)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안 별표 2).

4)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하는 한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문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시 하수도사업 운영 현황

○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1]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직영기업으로 같은 법 제14조[2]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재정수입 대부분이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음.

○ 2024년도 기준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 예산은 약 8,518억 24백만원으로, m^3당 평균원가 약 1,258원 대비 평균요금은 약 69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하고

---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이는 타 특·광역시 대비 최하위 수준임.

[표 1]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평균요금(원/㎥)	690	752	620	711	610	707	886	711
평균원가(원/㎥)	1,258	1,057	836	929	976	721	1,150	990
현실화율(%)	55	71	74	77	63	98	77	73

○ 현재,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는 총 10,866㎞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가 6,029㎞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약 150㎞씩 하수관로가 추가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연간 100㎞ 수준에 그치고 있고,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211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0.7%)으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서울시 관내 물재생센터 4곳(중랑, 난지, 서남, 탄천)의 시설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하는 실정으로,

-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원이 필요하지만 1조 5,447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됨.

[표 2] 서울시 하수도사업 주요 소요재원 추계(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6,219,244	1,259,252	1,317,545	1,175,855	1,206,854	1,259,738
하수관로	2,267,424	484,218	479,614	452,797	433,386	417,409
물재생시설	3,695,820	724,234	786,931	671,858	722,068	790,72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56,000	50,800	51,000	51,200	51,400	51,600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안 별표 2)

○ 안 별표 2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 누진요금 체계를 개편[3]하면서 단계적으로 연평균 9.5%씩 인상하려는 것으로,

[표 3] 개정안 주요골자(안 별표 2)

현 행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현행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이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용은 연간 1m^3당 약 72원씩 5년간 총 360원/m^3, 일반용은 연간 1m^3당 117.7원

3) -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단일요금제, (일반용) 누진제 6→4단계 축소

씩 5년간 총 588원/㎥, 욕탕용은 연간 1㎥당 78원씩 5년간 총 390원/㎥, 유출지하수는 연간 1㎥당 74원씩 총 5년간 370원/㎥이 인상[4]될 것으로 보임.

[표 4] 인상 전 후 하수도사용료 비교표

(원/㎥, %)

인상 전 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하수도사용료					
업 종	구 간	단가	사용량 비율	구 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가정용	30 이하	400	98.6%	㎥당	480	560	630	700	770
	30 초과 ~ 50 이하	930	0.9%						
	50 초과	1,420	0.5%						
일반용	30 이하	500	17.8%	30 이하	580	660	740	820	900
	30 초과 ~ 50 이하	1,000	6.6%	30 초과 ~ 100 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50 초과 ~ 100 이하	1,520	10.3%						
	100 초과 ~200 이하	1,830	10.3%	100 초과 ~ 1,000 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200 초과 ~1,000 이하	1,920	22.2%						
	1,000 초과	2,030	32.7%	1,000 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누진제 폐지	1,592	100%	누진제 폐지	1,769	1,872	1,975	2,078	2,180
욕탕용	500 이하	440	35%	500 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 초과 ~2,000 이하	550	42.5%	500 초과 ~ 2,000 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 초과	630	22.5%	2,000 초과	720	810	890	970	1,050
	누진제 폐지	530	100%	누진제 폐지	612	691	767	844	920
유출 지하수	㎥당	400	100%	㎥당	480	560	630	700	770

4) 〈 업종별 연평균 인상액(인상률) 현황(현실화율 80%) - 1㎥ 기준 〉
- 전 체(100%) - 연간 84.4원씩 5년간 총 422원 인상 (732원 → 1,154원) - 연평균 9.5%
- 가정용(70%) - 연간 72.0원씩 5년간 총 360원 인상 (410원 → 770원) - 연평균 13.4%
- 일반용(27%) - 연간 117.7원씩 5년간 총 588원 인상 (1,592원 → 2,180원) - 연평균 6.5%
- 욕탕용(1%) -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 인상 (530원 → 920원) - 연평균 11.7%
- 유출지하수(2%) - 연간 74.0원씩 5년간 총 370원 인상 (400원 → 770원) - 연평균 14.0%

[표 5] 연도별 실제 요금 및 인상률(상세)

(원/㎥, %)

연도	현재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증분
전체 업종	요금	732	831 (+99)	917 (+86)	997 (+80)	1,076 (+79)	1,154 (+78)	422 (연평균 84.4)
	인상률	-	13.6	10.4	8.6	7.9	7.3	57.73 (연평균 9.54)
가정용	요금	410	480 (+70)	560 (+80)	630 (+70)	700 (+70)	770 (+70)	360 (연평균 72)
	인상률	-	17.1	16.7	12.5	11.1	10.0	87.80 (연평균 13.43)
일반용	요금	1,592	1,769 (+177)	1,872 (+103)	1,975 (+103)	2,078 (+103)	2,180 (+102)	588 (연평균 117.6)
	인상률	-	11.1	5.8	5.5	5.2	4.9	36.96 (연평균 6.49)
욕탕용	요금	530	612 (+82)	691 (+79)	767 (+76)	844 (+77)	920 (+76)	390 (연평균 78)
	인상률	-	15.5	12.9	11.1	10.0	9.1	73.75 (연평균 11.68)
유출지하수	요금	400	480 (+80)	560 (+80)	630 (+70)	700 (+70)	770 (+70)	370 (연평균 74)
	인상률	-	20	16.7	12.5	11.1	10.0	92.50 (연평균 14)

○ 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세입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인상 첫해인 2026년엔 총 1,377억원이 증가하고, 요금인상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총 3,836억원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개정안 따른 추가 수입 추계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부족 재원(억원)	-15,447	-3,704	-4,062	-2,415	-2,489	-2,77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수입(억원)	13,186	1,377	2,059	2,660	3,254	3,836

○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65조[5]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

5)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하수도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2조제1항[6]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토론회를 2025.2.28.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5.6.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본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음.

[표 7]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개정 절차 예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업무내용	① 총괄원가 산출 ② 목표 요금 현실화율 결정 ③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작성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의견 수렴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심의	**하수도 사용 조례 심의/의결→ 조례개정**
업무주체	물순환안전국	토론회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2019부터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하면서 총괄원가는 연평균 4.1%씩 상승했지만, 사용료 수익은 연평균 0.7%씩 하락하였고, 2023·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 하수도사업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7]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55% 수준에 불과하여 재정 악

---

② - ④ (생 략)

6)「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화가 심화된 상황이며,

-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서울시 추계 결과 약 6조 2,192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 금회 인상안이 확정되면 인상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80% 수준에 도달하고 약 3,8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한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금회 요금 인상안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하수도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사용료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수익사업 및 비용절감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원가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고,

-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수입이 실제로 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투입된다는 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확보될 것임.

- 또한, 요금 인상분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성과관리와 공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한편, 가정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 가구($6m^3$ 기준)의 경우 월평균 요금이 현행 2,400원에서 2030년에는 4,620원으로, 4인

---

7) - 당기순이익 : 1,225억('19년) → 186억('20년) → 259억('21년) → 8억('22년) → △460억('23년) → △656억('24년)

가구(24㎥ 기준)의 경우 월평균 요금이 현행 9,600원에서 18,48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가계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임.

- 물가대책위원회(2025.6.5.) 역시 심의 주요 의견으로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인상율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400→480원/㎥)의 인상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행 30㎥ 이하 구간에 있는 가구들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현행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혜택[8]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한 산정 근거는 하수도 원가에 있다 할 것인바, 서울시는 하수도 원가산정에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 원가의 세부내역을 시민에게 항시 공개하여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1. - 15. (생 략)
② - ⑤ (생 략)

나. 기타 용어 정비 등

○ 안 제2조 본문, 제2조제3호·제12호가목·제12호나목·제12호라목, 제5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3호·제14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9] 등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의 문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8]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2조 본문, 제2조제3호·제12호가목·제12호나목·제12호라목, 제5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3호·제14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 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3. ---------- - 한다) ---------- ---------- ---------- ----------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행정안전부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생 략)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③ ---------- 해당 연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영"이라 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략)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④ ---------- ----------. ---------- ---------- 납부하도록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 ----------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감면)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9. ---------- - 경우 : ----------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 경우 : ----------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 경우: ----------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경우: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2023~2024년도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계산서
(2024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기준)

2.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 비교('23년 결산 기준)

3.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붙임 1〕 2023~2024년도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계산서
(2024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기준)

총괄원가계산서

당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금 액		비 고
		2024년(당기)	2023년(전기)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하수처리량(㎥) (A)	1,519,247,280	1,575,583,263	
	연간총조정량(㎥) (B)	1,075,306,570	1,054,286,405	
	하수도사용료수익(C)	742,170,292,490	730,653,996,020	
	총괄원가(D)	1,352,560,791,463	1,313,923,142,265	총괄원가(D)=(I+J+X)-(Y+Z)
	결함액(E)	610,390,498,973	583,269,146,245	총괄원가-사용료수익(E=D-C)
	㎥당요금(원/㎥) (F)	690.19	693.03	사용료수익/연간조정량(F=C/B)
	㎥당원가(원/㎥) (G)	1,257.84	1,246.27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
	요금현실화율(%)	54.87%	55.61%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 (H)	82.24%	79.83%	(총괄원가-사용료수익)/사용료수익H=(D-C)/C
영업비용	계(I)	1,120,477,184,052	1,055,614,049,350	
	인력운영비	56,724,549,824	49,638,225,608	
	일반운영비	14,191,440,085	8,595,651,058	
	약품비	11,888,898,377	17,057,053,127	
	동력비	48,890,458,050	50,028,362,436	
	수선교체비	368,105,058,276	366,657,913,654	
	민간위탁비	38,522,856,160	34,235,196,600	
	연구개발비	12,968,681,510	12,231,307,610	
	경상이전	207,979,455,441	150,914,079,633	
	감가상각비	358,731,163,593	362,187,888,224	무형자산상각비 포함
	퇴직급여	37,813,834	93,891,994	
	기타영업비용	2,436,808,902	3,974,479,406	

구 분		금 액		비 고
		2024 (당기)	2023 (전기)	
자본비용	자본비용계(J)	318,460,248,582	322,885,031,702	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J=K+L)
	타인자본비용(K) (이자비용)	-	-	
	자기자본보수(L)	318,460,248,582	322,885,031,702	요금기저*자기자본비용*적정투자보수율 (L=O*N*M)
	적정투자보수율(M)	4.76%	4.76%	
	자기자본비율(N)	99.87%	99.85%	
	요금기저(O)	6,699,050,121,931	6,793,489,219,163	순가동설비자산+운전자본+건설중인자산(O=P+W+V)
	순가동설비자산(P)	6,299,157,906,101	6,445,421,113,170	(P=Q-R-S-T-U)
	총가동설비자산(Q)	6,406,205,579,072	6,534,979,534,544	
	원인자부담금(R)	100,679,960,206	83,632,657,886	
	공사부담금(S)	6,367,712,765	5,925,763,488	
	기부금(T)	-	-	
	재평가적립금(U)	-	-	
	건설중인자산(V)	273,051,899,900	233,124,283,800	
	운전자금(W)	126,840,315,930	114,943,822,193	(영업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포함) - 대손상각비 - 퇴직급여) * 2/12
영업외 비용	영업외비용(X)	1,059,283,279	696,000,000	이자비용제외
기타 영업 수익	기타영업수익(Y)	65,950,282,610	52,970,931,240	
영업외수익	계(Z)	21,485,641,840	12,301,007,547	
	이자수익	17,621,946,570	9,071,921,877	
	타회계전입금수익	-	-	
	기타영업외수익	3,863,695,270	3,229,085,670	

〔붙임 2〕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 비교('23년 결산 기준)

- 요금 현실화율: 대전(85%)> 대구(82%) > 울산(81%) > 인천(80%) > 광주(66%) > 부산(63%) > 서울(56%)
- 평균요금: 울산(889원) > 서울(693원) > 인천(683원) > 부산(643원) > 대구(621원) > 대전(611원) > 광주(596원)
- 평균원가: 서울(1,246원) > 울산(1,100원) > 부산(1,014원) > 광주(908원) > 인천(853원) > 대구(762원) > 대전(719원)

<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 하수시설 현황 >

연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서울	요금 현실화율 (%)	67	60	57	53	56
		평균요금 (㎥/원)	679	643	628	645	693
		평균원가 (㎥/원)	1,009	1,079	1,102	1,214	1,246
		하수관로연장 (m)	10,723,669	10,798,476	10,827,520	10,837,500	10,865,912
		하수시설용량 (㎥/일)	4,980,000	4,980,000	4,980,000	4,980,000	4,980,000
2	부산	요금 현실화율 (%)	78	71	67	66	63
		평균요금 (㎥/원)	661	646	634	644	643
		평균원가 (㎥/원)	848	913	941	970	1,014
		하수관로연장 (m)	9,608,974	9,898,530	10,149,832	10,166,483	10,187,629
		하수시설용량 (㎥/일)	1,901,790	1,910,790	1,910,790	1,910,790	1,909,100
3	대구	요금 현실화율 (%)	96	87	85	77	82
		평균요금 (㎥/원)	633	602	597	599	621
		평균원가 (㎥/원)	660	688	704	779	762
		하수관로연장 (m)	6,082,621	6,139,393	6,179,428	6,208,778	6,525,160
		하수시설용량 (㎥/일)	1,874,950	1,874,950	1,874,950	1,879,150	1,879,950
4	인천	요금 현실화율 (%)	77	70	73	82	80
		평균요금 (㎥/원)	538	526	595	647	683
		평균원가 (㎥/원)	697	750	818	784	853
		하수관로연장 (m)	5,670,053	5,695,559	5,698,612	5,725,463	5,751,669
		하수시설용량 (㎥/일)	1,087,910	1,134,970	1,135,420	1,158,420	1,156,510
5	광주	요금 현실화율 (%)	65	60	68	73	66
		평균요금 (㎥/원)	482	525	587	581	596
		평균원가 (㎥/원)	744	880	859	792	908
		하수관로연장 (m)	4,428,497	4,453,638	4,466,418	4,472,615	4,569,560
		하수시설용량 (㎥/일)	738,425	738,425	738,425	738,425	736,000
6	대전	요금 현실화율 (%)	88	77	77	81	85
		평균요금 (㎥/원)	594	520	559	538	611
		평균원가 (㎥/원)	671	676	728	666	719
		하수관로연장 (m)	3,565,091	3,599,636	3,603,716	3,645,725	3,661,367
		하수시설용량 (㎥/일)	901,000	901,000	901,000	901,000	901,000
7	울산	요금 현실화율 (%)	74	73	80	83	81
		평균요금 (㎥/원)	681	730	750	877	889
		평균원가 (㎥/원)	923	1,005	935	1,054	1,100
		하수관로연장 (m)	4,589,513	3,866,418	4,691,987	4,565,780	4,741,062
		하수시설용량 (㎥/일)	716,220	736,220	736,320	736,320	776,000
평균		요금 현실화율 (%)	78	71	72	74	73
		평균요금 (㎥/원)	610	599	621	647	677
		평균원가 (㎥/원)	793	856	870	894	943
		하수관로연장 (m)	6,381,203	6,350,236	6,516,788	6,517,478	6,614,623
		하수시설용량 (㎥/일)	1,742,899	1,753,765	1,753,843	1,757,729	1,762,651

※ 평균원가가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노후시설 정비, 교체소요 발생으로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붙임 3〕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 계
<사업비 지출 총 계>	12,301	13,004	15,963	15,969	15,354	15,543	15,593	21,958	24,236	25,091	175,011
하수관로 계	6,936	7,512	6,956	6,774	6,618	6,640	6,719	5,942	6,683	6,764	67,544
투자사업비	6,100	6,668	6,104	5,913	5,750	5,764	5,835	5,057	5,799	5,880	58,870
유지관리비	836	844	852	861	868	876	884	885	884	884	8,674
물재생센터 계	4,857	4,981	8,495	8,681	8,220	8,385	8,354	15,494	17,029	17,801	102,297
투자사업비 소계	760	761	4,148	4,204	3,609	3,467	3,289	10,589	13,192	14,624	58,683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0	330	3,407	3,549	2,698	2,746	2,846	9,897	12,519	13,992	52,194
총인처리시설	5	21	284	294	557	250	-	-	-	-	1,411
초기우수처리시설	-	-	-	-	-	70	100	350	350	350	1,220
차집관로 성능개선	140	140	140	140	140	227	227	227	227	227	1,835
슬러지자체처리시설	160	60	56	40	30	-	-	-	-	-	346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사업	-	-	60	100	100	58					318
서울형 물산업 클러스터						40	40	40	40	0	160
용역 등 기타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0
차집관로 통합운영시스템	178	144	140	20	20	20	20	20			562
차집관로 단절구간 정비	8	6	6	6	6						32
우수토실 역류방지시설	5	6									11
유지관리비 (4개 센터)	4,097	4,220	4,347	4,477	4,611	4,918	5,065	4,905	3,837	3,137	43,614
행정업무 및 재무활동비	508	510	512	514	516	518	520	522	524	526	5,170
CSOs저감시설	-	-	402	941	937	-	-	105	58	58716	61,159
(일반회계) 빗물펌프장,저류조	716	455	884	1,068	717	174	88	-	-		4,12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금회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인상율 13.43%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인상율이 나타나 부담이 우려되므로,

○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 징수 온라인시스템 개편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월과 2월 사용에 대한 3월 납기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039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1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금회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인상율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인상율이 나타나 부담이 우려되므로,

○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 징수 온라인시스템 개편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월과 2월 사용에 대한 3월 납기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안 제34조제1항제9호, 안 제34조제1항제10호 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제9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한다.

안 제3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감면) ① (생략)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 ------	7. (개정안과 같음)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 ---------- ---------- ---------- ---------- ---------- ---------- ---------- ---------- -----	8. (개정안과 같음)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9. ----------**세 명** ---------- 경우 : ----------	9. ----------**두 명** ---------- 경우 : ----------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 경우 :** ----------	**(삭 제)**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1. - 12. (개정안과 같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 --- 경우: ----------	13. (개정안과 같음)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	1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14. (개정안과 같음)

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 ---------- --- 경우: ---------- ---------- ----	
15. (생 략) ② ~ ⑤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경우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 11. (생 략)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2조(정의) ------------------------ 뜻은 -----------. 1.·2. (현행과 같음) 3. --------------------------------------- 한다) --. 4.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 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	④ ---------- ----------

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생 략)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③ ---------- 해당 연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영"이라 한다)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④ ----------

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 ---------- ----------. ---------- ---------- 납부하도록 ----------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 ---------- -. ---------- ---------- ---------- ---------- 제외한다)-----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 ---------- ---------- -----.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감면) ①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 ----------

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9. ----------두 명 ---------- 경우 : ----------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삭 제)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 경우: ----------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경우: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신 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0초과~10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